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부과〉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66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부과	2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1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규모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등 제한적인 상황임.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빈도나 재해예방활동, 안전투자규모 등은 취업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에 속함에도 알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부과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등 사업장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① 사업주는 매년 초 다음 각호의 사업장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u> <u>1.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현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한다)</u> <u>2. 안전보건투자의 규모</u> <u>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당해 년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u> <u>4.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u> <u>5.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그 이행계획</u> <u>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정보</u> <u>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방법,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현재 고용노동부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정보시스템에 사업장 내 고용형태 현황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 노력에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알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등을 공시토록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안전보건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개정안은 이러한 공시제도를 사업주의 의무로 법률에 규정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공시제도는 산업재해와 산업안전에 관한 기업의 주요 정보 공개로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를 유인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기업의 공시 참여도와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함에도 미공시 또는 오공시나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가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시 의무 위반 사업주

에 과태로 부과 등 최소한의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는 공시의무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규정하면서 시행일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부칙에 실질적인 공시 의무대상 사업장을 정하고 있는데, 공시의무 대상 사업장은 개정안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으로 부칙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매년 초”라 규정함으로써 공시 주기와 시기를 법문에 표현하고 있으나, 시기로서 “매년 초”는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체(법인)단위로 공시하고, 장소적으로 분리·운영되더라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예산 반영이 확정되면 시스템 구축 및 관련 홍보 등을 필수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바 부칙에 준비행위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개정안 본문과 부칙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방부는 부칙 시행일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

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공시의무 대상으로 명시함에 따라 군사령부나 사단·여단 등 군 조직과 국방행정 사업, 국가방위에 관련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포함되어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